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4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김승원·김준형·조 국

이병진 • 김종민 • 이기헌

임호선 · 안태준 · 민병덕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

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안 제6조제2항).
- 나.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 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다.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보장 등"을 "보장 및 여론의 다원화를 통한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 및 잡지에"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에"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직전년도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④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종 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 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홍보매체 선정에서 배제한다.

⑤ 제2항의 정부광고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잡지의 진훙"을 "정기간행물의 진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 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 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 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 보장 및 여론의 다원 고려하여야 한다. 화를 통한 언론의 공공성과 공 익성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② ----- 신문, 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터넷신문, 뉴스통신 및 정기간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물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 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 직전년도 「국민참여를 통한 언 고 · 검증 · 공개한 신문 및 잡 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최 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 고비를 결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신 설>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 행물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 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
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
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
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 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

 건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우선

 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④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종 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홍보매체 선정에서 배제한다.
- ⑤ 제2항의 정부광고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⑥ (현행 제3항과 같음)<삭 제>

| 제10조(정부광고 | 업무의 | 위탁) | 1 |
|-----------|-----|-----|---|
| ~ ③ (혀행과 | 간을) | | |

| 4 | | | |
|---|------|------|--|
| | | | |
| | | | |

- 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
 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u>잡지의</u>
 <u>진흥</u>을 위한 지원
- 2. · 3. (생략)
- ⑤ (생 략)

| 1 |
|------------------|
| <u>정기간행</u> |
| 물의 진흥 |
| 2. · 3. (현행과 같음) |
| ⑤ (현행과 같음) |